

#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시민교육지원과

제정 2007· 9· 18 규칙 제359호  
 개정 2010· 8· 13 규칙 제426호  
 일부개정 2018· 5· 4 규칙 제624호  
 일부개정 2019· 5· 8 규칙 제651호  
 일부개정 2021· 5· 1 규칙 제703호  
 일부개정 2023· 9· 8 규칙 제758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· 5· 8>

**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** ① 「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· 8· 13, 2019· 5· 8, 2021· 5· 1, 2023· 9· 8>

1.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교직원 사택 건립사업
2.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중 교육기관 보조사업
3.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점시책사업

②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한다. 다만, 국·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 사업,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은 그렇지 않다. <개정 2019· 5· 8>

**제3조(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)**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· 5· 1>

1.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
2. 국·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
  - 2의1. 경기도, 경기도교육청, 이천시가 공동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
3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
4. 이천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

- 5. 그간의 지원예산이 적은 학교
- 6. 자부담 등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

**제4조(보조금 지원의 제한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- 1. 이천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은 경우
- 2. 전액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(교실 신·증축 등)
- 3.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
- 4. 시장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

[전문개정 2021·5·1]

**제5조(보조금 신청)**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9·5·8>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청구서(별지 제2호 서식)와 사업계획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첨부한다. <개정 2021·5·1>

[제목개정 2021·5·1]

**제6조(심의위원회 회부)**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여부에 대한 사항을 회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대응투자사업 비율 적용)**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이 지원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(보조금의 교부결정)**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,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이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.

**제9조(보조금의 반환 등)**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1.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한 때
2.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
3.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
4. 그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을 발견한 때

② 삭제 <2018·5·4>

**제10조(검사)**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1조(보조금의 정산)**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정산검사 실시 후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1·5·1]

#### 부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, 이미 결정·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·집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0·8·13 규칙 제42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·5·4 규칙 제624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·5·8 규칙 제65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·5·1 규칙 제70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부칙 <2023·9·8 규칙 제758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【별지 제3호 서식】 (제5조제2항 관련) <개정 2023. 9. 8>

# 사업계획서

(사업명 : )

목적

## 학교 일반현황

- 학교명 : (행정실 ☎ , Fax )
- 소재지 :
- 학교장 :
- 개교년월일 :
- 학급및학생수 :
- 교직원수 :
- ▶ 사업담당자 : (☎ )

## 총괄내역

(단위 : 원)

총사업비	소요재원 확보계획			
	시보조금	자체부담		
		소계	교육청	자부담

사업추진계획

- 사업명 :
- 기간 :
- 위치(장소) :
- 총 사업비 :            원(시보조            , 교육청            , 자부담            )
- 사업내용(사업규모를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재)

- 소요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원)

구분	용도	금액	산출기초
총계			
시보조금	소계		

소요재원 확보계획

기대효과

[별지 제3-1호서식] 삭제 <2021. 5. 1>

[별지 제3-2호서식] 삭제 <2021. 5. 1>

【별지 제4호 서식】 (제11조 관련) <신설 2021.5.1>

## 보조사업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서

학 교 명			대 표 자	
소 재 지			전 화 번 호	
보조사업명				
사업기간				
보조사업자	성 명 (대표자)			
	주 소			
보조사업비 집행내역	예 산 액	집 행 액	집 행 잔 액	
	세 부 내 역	“붙임”		
<p>「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학 교 명 :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대 표 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 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1.2em;">이 천 시 장 귀하</p>				

## 보조사업 추진결과 정산 보고서

1. 사업추진결과

- 사업기간 :
- 사업장소 :
- 추진성과 :

2. 사업비 정산 총괄표

(단위 : 원)

총 사업비				집행액				집행잔액			
계	보조금	교육청	자부담	계	보조금	교육청	자부담	계	보조금	교육청	자부담

3.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

(단위 : 원)

계	집행잔액	이자 발생액	집행잔액 발생사유

4. 사업계획 변경내역(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)

세부 내용	원가비목	당초예산	변경예산	변경사유	시 승인여부

5.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

사업 개요	
추진 실적	
자체평가 (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결과임)	
효과	
향후 개선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제점</li> <li>○ 개선사항</li> </ul>
향후 계획	

